

의안 번호	1571	[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 출연금 동의를 건]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9. 9. 6.(금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9. 6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9. 9. 18.(수)

2. 제안이유

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라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중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출연기관 : 한국지방세연구원
- 나. 출연금 : 5,680천원
- 다. 산출기준 :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5
※ 2018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37,865,305천원 × 1.5/10,000
- 라. 주요사업
 - 1)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
 - 2)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
 - 3)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, 구제업무 지원

4. 근거법규

- 가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
- 나.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
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의 건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,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며, 해당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상위법령에 따른 구의 출연 및 출연금액이 적정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.